

1. 제정이유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6조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

나. 2026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6조, 「주거급여법」 제5조, 제7조 및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보건복지부, 기획재정부와 협의되었음

라. 기 타 :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규제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정고시안

1. 주거급여 선정기준

「주거급여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.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금액(원/월)	1,230,834	2,015,660	2,572,337	3,117,474	3,627,225	4,106,857	4,567,272

*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(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)

2.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

가. 임차급여

「주거급여법」 제7조제3항 및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원/월)

구분	1급지(서울)	2급지(경기·인천)	3급지(광역시·세종시·수도권 외 특례시)	4급지(그외 지역)
1인	369,000	300,000	247,000	212,000
2인	414,000	335,000	275,000	238,000
3인	492,000	401,000	327,000	283,000
4인	571,000	463,000	381,000	329,000
5인	591,000	479,000	394,000	340,000
6인	699,000	568,000	463,000	402,000

*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, 가구원수가 8~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%를 가산 (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(2인 증가 시 10% 인상)에 따라 적용)

나. 수선유지급여

「주거급여법」 제8조제2항 및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(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)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경보수	중보수	대보수
수선비용	590만원	1,095만원	1,601만원
수선주기	3년	5년	7년

*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%,

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~중위소득 40%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%,

③ 중위소득 40% 초과~중위소득 48%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% 지원

**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(제주도 본섬 제외)의 경우, 위 수선비용을 10% 가산

부 칙

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